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오한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3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04일

발 의 자 : 오한아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경만선, 김소영, 김춘례,
김태호, 노승재, 문병훈,
신원철, 안광석, 유 용,
최영주, 황규복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「박물관·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(2019~2023)」(2019.6. 문화체육관광부)에 근거 서울시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하여 종합,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‘시장의 책무’를 규정하고, 박물관·미술관 진흥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 현황 점검 사항들을 위해 조례에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박물관, 미술관의 정책 기능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)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)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)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